

개발제한구역내 LPG자동차충전소 허용기준

지난 8월 14일자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이 확정·공포됐다.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의 설치에 대한 관련 법 내용을 게재한다.

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[2000. 1. 28 공포 2000. 7. 1시행]

○ 제11조 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

□ 동법 시행령 [2000. 7. 1]

○ 제13조 제1항 [별표1]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

4. 균린생활시설, 파. 휴게소·주유소 및 자동차용 LPG충전소

(가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·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. 다만,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(나)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 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,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주유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(다)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안 당해 도로노선의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

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□ 동법 시행규칙 [2000. 8. 14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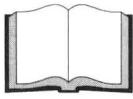
○ 제4조 (주유소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)

1.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·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, 당해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

2. 주유소간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하고,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

3.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2 이상의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·군·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그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

4.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·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것



법규관련

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-85호

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액화석유가스(프로판 및 부탄)최고판매가격 고시(산업자원부고시 제2000-62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0년 9월 1일
– 산업자원부장관 –

국내액화석유가스(프로판및부탄)최고판매가격고시중 개정고시

■ 국내 액화석유가스(프로판 및 부탄) 최고판매가격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제1항제2호 나목 본문중 “부가세전 수입 · 정유사 판매가격” 및 주(7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부가세전 수입 · 정유사 판매가격
 = 원료비 + 국내공급비용

$$= \{(\text{국제기준가격(FOB)} + \text{운임} + \text{보험료} + \text{검정료} + \text{관세} + \text{도입부대비} + \text{도입금융비} + \text{감모}) \times \text{환율}\} + \text{환차} + \text{특별소비세액} + \text{안전관리부담금} + \text{국내공급비용}$$

$$= \{(\text{FOB} \times 1.02648) + 0.031582\} \times \text{환율} + \{\text{FOB} \times 120.421 \times (\text{직전4개월간환차} \div \text{직전4개월간일수})\} + \{(\text{FOB} \times 1.000530 + 0.03034) \times \text{관세율} \times \text{환율}\} + \text{특별소비세} + \text{안전관리부담금} + \text{국내공급비용}$$

(7) 국내공급비용은 액화석유가스 수입사의 액화석유가스 내국수송비, 인수기지비용, 정산분 등을 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.

유 종	국내공급비용(원/kg)
프로판	83.93
부탄	83.93

부 칙

이 고시는 2000년 9월 1일 0시부터 시행함